

DDA, 2008년 2월 농업협상 동향*

신 유 선

1. 협상 동향

DDA 협상은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당초에는 2004년 12월 협상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수립하였으나 회원국간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중단되는 고비를 겪기도 하였고, 현재는 2008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2004년 8월 기본골격 채택, 2005년 12월 향후 협상일정 채택, 2007년 7월 세부원칙(Modalities)¹⁾ 초안 배포 그리고 2008년 2월 세부원칙 개정안이 배포되었다.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1)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2. 의장 세부원칙 개정안의 내용과 특성²⁾

2008년 2월 9일에 WTO 농업협상회의 팔코너 의장은 세부원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2007년 7월에 제시한 초안, 같은 해 11월과 2008년 1월에 제시한 작업문서(Working documents), 그리고 그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이번 세부원칙 개정안에서는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이행기간, 특별품목 개수 등 핵심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최소 평균 감축률, 열대작물에 대한 추가 관세감축 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제안한 점이 특징이다.

표 1 세부원칙 개정안과 초안 주요내용 비교

쟁 점		세부원칙 초안 (2007년 7월)	세부원칙 개정안 (2008년 2월)	
시 장 접 근	관세 감축	*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	*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8년) - 구간경계 및 감축률은 초안과 동일 *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 36%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2-65
		20% ~ 50%		55-60
20%이하	48-52			
		- 개도국 구간경계 30/80/130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		

(표 1 계속)

2) WTO 문서 TN/AG/W/4/Rev.1(8 February 2008)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쟁 점		세부원칙 초안(2007년 7월)	세부원칙 개정안(2008년 2월)												
시 장 접 근	관세상한	*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나, 감축 후 관세가 100%이상 세번이 5%가 넘는 경우 TRQ 증량	*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 세번이 4%가 넘는 경우 민감품목의 TRQ 증량												
	민감품목	* 개수 : 세번의 4% 또는 6% (개도국 5~8%) * 대우 : 국내소비량의 3~6% TRQ증량 (개도국 2~4%)	* 개수 및 대우는 초안과 동일												
	특별품목	* 세부원칙 초안에서는 논의방향만 제시(의장 작업문서('08.1) : 특별품목 개수 9-17%)	* 개수는 8-20%, 관세감축 면제 (세번의 8%)가능성 제시												
	열대작물	* 세부원칙 초안에서는 논의방향만 제시	* 열대작물 목록 제시(쌀, 고추 등 포함)												
국 내 보 조	OTDS 및 AMS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75][85]</td> <td>[70]%</td> </tr> <tr> <td>미국·일본</td> <td>[66][73]</td> <td>[60]%</td> </tr> <tr> <td>기타</td> <td>[50][60]</td> <td>[45]%</td> </tr> </tbody> </table>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	[50][60]	[45]%	* OTDS 구간별 감축률은 초안과 동일 * AMS 구간별 감축률 괄호([]) 제거 - 선진국 이행기간 5년(개도국 8년)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	[50][60]	[45]%													
허용보조	* 허용보조 수혜자격기준 강화(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변경) - 단, 예산제약 등을 조건으로 예외적인 기준기간 변경 가능	* 수혜자격기준 강화 및 기준기간 변경 가능성은 초안과 동일 - 기준기간 변경시 예산제약 조건 삭제													
수 출 경 쟁	수출보조	* 선진국 2013년까지 철폐 (개도국 []까지 철폐)	* 개도국 2016년 철폐(단, 수출물류비는 2021년까지 유지 가능)												

주: DDA 협상에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OTDS=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e-minimis)+블루박스 금액을 합산한 개념이다.
자료: 농림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p.9, 2008.2.12

2.1.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

초안이 내놓은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최소 평균 감축률을 명확히 하고 TRQ 증량과 이행기간 설정 측면에서 새로운 지침을 담았다.

관세감축

관세 구간경계와 감축률은 <표 2>와 같고, 양허관세가 높을수록 더 큰 감축률을 적용함으로써 관세조화를 꾀한다.

표 2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

관세구간	선진국			개도국		
	양허관세 (%)	감축률(%)		양허관세 (%)	감축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1	<20	48	52	<30	32.0	34.7
2	20~50	55	60	30~80	36.7	40.0
3	50~75	62	65	80~130	41.3	43.3
4	75<	66	73	130<	44.0	48.6

자료: WTO(2008)

선진국의 최소 평균 관세 감축률로 54%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민감품목 감축률까지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감축의무를 요구한다.³⁾ 개도국의 최대 평균 관세 감축률은 36%로, 이보다 더 큰 감축이면 감축률을 이에 맞춰 낮출 수 있다. 개도국 감축률에는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 감축까지 포함한다는 언급이 없다. 소규모 취약국(SVE)과 최근 가입국(RAM)은 감축 신축성을 인정받는다.⁴⁾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다.

3) 열대작물과 경사관세로 말미암아 전체 평균 감축률이 2.5% 포인트 이상으로 추가되지 않는 한 이들 감축률은 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구간별 감축률보다 SVE는 10% 포인트, RAM은 7.5% 포인트 덜 감축할 수 있으며, 10% 이하의 RAM 관세는 감축의무에서 면제한다.

민감품목⁵⁾

선진국은 영세율이 아닌 세번의 [4%] [6%]를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세번의 30% 이상이 제4구간(관세 75% 이상)에 속하거나, HS 6단위 관세 양허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국은 그 민감품목 수를 [6%] [8%]로 증대할 수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민감품목 수를 1/3만큼 더([5.3%] [8.0%]) 설정할 수 있다.

일반품목과 관세격차(deviations)는 3단계로 정하되, 격차가 클수록 쿼터 증량 폭이 늘어난다<표 3>. 개도국은 선진국의 2/3만큼 쿼터를 증량하되, 소비량 산출에서 생계농가의 자가 소비량은 제외한다. 쿼터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이다.

표 3 민감품목의 관세격차와 쿼터 증량의 관계

관세격차 (일반품목 감축률 대비)	쿼터 증량(국내 소비량 대비 %)			
	선진국		개도국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3	3.0	5.0	2.0	3.3
1/2	3.5	5.5	2.3	3.7
2/3	4.0	6.0	2.7	4.0

자료: WTO(2008)

세번의 2%를 민감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회원국은 관세격차와 관계없이 추가된 품목에 대한 국내 소비량의 [0.5%] [1%]를 추가 쿼터로 설정해야 한다.

5)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감축 공식을 적용한 후에 관세가 100% 이상인 세번이 전체의 4% 이상일 때 민감품목에 대한 쿼터를 추가로 증량해야 한다. 이는 관세상한 설정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쿼터 증량 수준은 빈 칸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양허 쿼터가 이미 국내 소비량의 10%와 30% 이상일 때에는 관세격차에 따라 쿼터 증량을 완화해야 한다<표 4>. 쿼터 증량은 이행 첫날부터 추가 소비량의 최소한 1%가 되도록 시행하되, 12개월마다 소비량 대비 1%를 늘린다.

표 4 국내 소비량 대비 양허쿼터에 따른 쿼터 증량

국내 소비량 대비 양허쿼터	관세격차	쿼터 증량(국내 소비량 대비 %)			
		선진국		개도국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0% 이상	1/3	2.5	3.5	1.7	2.3
	1/2	3.0	4.0	2.0	2.7
30% 이상	1/3	2.0	3.0	1.3	2.0
	1/2	2.5	3.5	1.7	2.3

자료: WTO(2008)

특별품목6)

특별품목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기준에 맞춰 예시한 12개 지표에 따라 개도국 스스로 세번의 최소 8%에서 최대 [12%] [20%]를 선정하였다.

관세 감축률은 <표 5>와 같다. 최소한의 특별품목(예: 세번의 8%)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면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 6)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간 입장차가 크다.

표 5 특별품목의 관세 감축률

세번 비중(%)	감축률(%)	
	최소	최대
6	8	15
6	12	25
8	0	-

자료: WTO(2008)

소규모 취약국(SVE)⁷⁾은 ① 앞에서 설명한 완화된 구간별 감축공식과 특별품목 규정에 따라 감축하거나, ② 원하는 세번을 특별품목을 지정하여 전체 평균 24% 감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신규 가입국(RAM)은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2%]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특별품목 수는 [1%] 더 많고 감축률은 [2%] 더 낮으며, 세 번 [1%]를 추가로 관세감축 면제에 적용할 수 있다.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⁸⁾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2개월에 [3] [8] 품목 이상 발동할 수 없다. 가격과 물량기준 SSM이 가능하나, 같은 품목에 동시에 가격과 물량기준 SSM을 발동할 수 없다. SSM은 반덤핑 조치, 상계조치, SG가 적용되는 가운데 추가로 사용될 수 없다.

물량기준 SSM에서 기준은 3년 이동 평균 수입량이며, 이를 기초로 한 발동 기준과 구제조치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구제조치는 실행관세에 추가관세를 더하는 것이다. TRQ 제도 아래 수입되는 물량도 발동기준에 포함하지만 구제조치가 TRQ 물량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7) 소규모취약국가는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덜 삭감할 수 있다.

8)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6 물량기준 SSM의 발동과 구제조치

발동 기준		구 제 조 치					
기준 대비 수입량 비중(%)		양허관세 대비				구제조치가 현행 양허관세를 초과할 때 대안	
		추가 관세(%)		추가 %포인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05~110	130~135	20	50	20	40	양허관세가 최대 상한	
110~130	135~155	25	75	25	50	추가관세는 현행 양허관세와 도하라운드 이전 양허관세 격차의 1/2로 제한	
130<	155<	30	100	30	60	도하라운드 이전 양허관세가 최대 상한	

자료: WTO(2008)

가격기준 SSM에서 발동기준은 최근 3년 평균 월별 가격의 [70%] 이하이다. 국내통화로 산출한 CIF 수입가격이 기준이며, MFN에 기초한 것이다. 수입할 때에 국내통화가 지난 12개월에 견주어 10% 이상 평가절하 되었다면, 수입가격은 3년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가격기준 SSM의 구제조치는 선적(shipment) 기준으로 적용하며, 추가 관세는 수입가격과 발동가격 간 격차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 관세가 도하라운드 전후 양허관세 간 격차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은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가격기준 SSM을 사용할 수 없다. 물량기준 SSM은 발동한 연도 말까지 또는 최대 [6개월] [12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다. 어떤 품목도 두 번 연속 [6개월] [12개월] 동안 발동할 수 없다.

특별세이프가드(SSG)⁹⁾

SSG에 관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선진국은 이행 첫 날에 SSG를 폐지하거나 SSG 대상 품목을 세 번의 1.5%로 줄이고, 개도국은 세 번의 [X%]로 줄인다. 둘째, 선진국이 SSG를 [4년] 안에 없앤다면, 이행 첫 해에 SSG 대상 품목을 세 번의 1.5%로 줄이고, 2년 후에는 그것의 1/2로 축소하며 나머지 2년 후에서 완전히 철폐한다. 물량 발동기준은 3개년 이동 평균으로 ①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최소 10% 이상, ② 수입량이 최소 25% 이상 증가, ③ 국내 소비량 대비 수입량 비중이 0.35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가격기준 SSG는 이행기간에 당해 연도 해당 세 번의 2/3 이상을 발동할 수 없으며, 현재 규정(농업협정 제5조)에서 명시한 계수를 절반으로 줄인다.¹⁰⁾

열대작물¹¹⁾

구간별 감축공식 위에 적용하는 열대작물에 대한 조치는 <표 7>과 같으며,

9)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10) 농업협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가격기준 SSG 발동과 구제조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① $(Tp-P) < Tp \times 10\%$ 이면 $D1 = 0$;

② $(Tp-P) > (Tp \times 10\%)$ 이고 $(Tp-P) < (Tp \times 40\%)$ 이면, $D2 = 30\% \times [(Tp-P) - (Tp \times 10\%)]$;

③ $(Tp-P) > (Tp \times 40\%)$ 이고 $(Tp-P) < (Tp \times 60\%)$ 이면, $D3 = 50\% \times [(Tp-P) - (Tp \times 40\%)] + D2$;

④ $(Tp-P) > (Tp \times 60\%)$ 이고 $(Tp-P) < (Tp \times 75\%)$ 이면, $D4 = 70\% \times [(Tp-P) - (Tp \times 60\%)] + D2 + D3$;

⑤ $(Tp-P) > (Tp \times 75\%)$ 이면 $D5 = 90\% \times [(Tp-P) - (Tp \times 75\%)] + D2 + D3 + D4$;

P=현재 수입가격, TP= 발동가격, Di=추가 관세(i=1, 2, ... 5)

11)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열대작물은 민감품목 지정에서 배제시킨다.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 감축에 능력이 되는 개도국의 참여를 권장한다.

표 7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감축 대안

대안	양허관세(%)	조 치
1	≤ 25	영세율로 축소
	25 <	85% 감축
2	< 10	영세율로 축소
	10 ≤	제4구간 관세를 빼고는 [66%] [73%] 감축 제4구간 관세는 경사관세 감축률보다 2% 증가한 것을 적용

자료: WTO(2008)

표 8 열대작물 목록

HS96	품목명
060240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060290	산 식물(뿌리, 버섯균사를 포함)
060310	절화와 꽃봉오리(신선)
060390	절화와 꽃봉오리(건조)
060491	잎과 가지(신선)
060499	잎과 가지(신선 제외)
070190	감자(신선/냉장)
070310	양파
070960	고추류(신선/냉장)
070990	채소류(신선/냉장)
071190	기타 채소류
071390	기타 건조 콩과 식물
071410	매니옥(카사바, 신선/건조)
071420	고구마
071490	참깨, 샬렘(신선/건조)
080111	코코넛(말린 것)
080119	기타 코코넛
080290	견과류(신선/건조, 탈각하지 않은 것)
080300	바나나(신선/건조)
080420	무화과(신선/건조)
080430	파인애플(신선/건조)

(표 8 계속)

HS96	품목명
080440	애버카도우(신선/건조)
080450	과아버, 망고, 망고스틴(신선/건조)
080510	오렌지(신선/건조)
080520	맨더린, 클레멘타인과 감귤류(신선/건조)
080530	레몬과 라임(신선/건조)
080590	기타 감귤류(신선/건조)
080711	수박(신선)
080719	멜론(신선)
080720	파파야(신선)
081090	타마린드 등 기타 식용과일(신선)
081190	과일류와 견과류(냉동)
081290	과일류와 견과류(조제)
081340	기타 과일류
081350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00	감귤류와 멜론의 껍질
090112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없는 것)
090121	커피(볶았으며, 카페인 있는 것)
090122	커피(볶았으며, 카페인 없는 것)
090190	커피(기타, 볶은 것)
09021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090412	고추류(과쇄 또는 분쇄한 것)
090420	고추류(건조, 과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090700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에 한함)
091010	생강
100610	벼(탈곡)
100620	현미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 불문)
100640	쇄미
110230	쌀가루
110620	사과·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에 한함)
110630	콩과 식물의 가루(건조)
110814	매니옥(카사바) 전분
120210	낙화생(탈각하지 않은 것, 볶거나 조리하지 않은 것)
120220	낙화생(과쇄여부불문)
120890	기타 채유용 종자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 대두의 것 제외)
121190	약용, 향료, 살충제용 식물(기타)

(표 8 계속)

HS96	품목명
121210	로커스트두(로커스트두씨 포함)
121299	식물성 생산품 기타(식용)
130219	채소즙과 추출물(기타)
140190	기타 채소류
150710	대두유(조유)와 그 분획물
151110	팜유(조유)
151190	팜유(정제유)와 그 분획물
151211	해바라기씨유(조유)와 그 분획물
151219	기타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151311	코코넛유(조유)와 그 분획물
151319	기타 코코넛유와 그 분획물
151321	팜핵 또는 팜유
151329	팜핵 또는 팜유와 그 분획물
151410	유채유, 겨자유(조유)
151490	유채유, 겨자유(기타)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620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1710	마가린(액상 제외)
152190	밀납
170111	사탕수수당
170191	사탕수수당, 사탕무우당, 화학적순수자당(향미나 착색제 첨가한 것)
170199	기타 사탕수수당, 사탕무우당, 화학적순수자당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180310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하지 않은 것)
180400	코코아 버터(지와 유)
180500	코코아 분말(가당한 것 제외)
180610	코코아 분말(가당한 것)
180620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품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80631	초콜릿, 코코아 조제품(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속을 채운 것,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80632	초콜릿, 코코아 조제품(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속을 채우지 않은 것,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80690	초콜릿, 코코아 조제품(기타)
200190	식초나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200410	감자(조제, 냉동)

자료: WTO(2008)

TRQ¹²⁾

기존 쿼터 내 관세(in-quota tariff)는 ① 일반 감축률, ② 민감품목 감축률에 20%를 더한 수준(개도국은 14%), 또는 ③ 5년간 균등 감축하여 폐지한다.¹³⁾

도하 라운드의 새로운 TRQ체제 아래 쿼터 내 관세는 ① 영세율, 또는 ② 구간별 감축공식에 상응하는 감축률을 적용하되, 민감품목에 따른 관세격차(낮은 감축률)는 제4구간 10% 포인트, 제3구간 7.5% 포인트, 제2구간 5% 포인트, 제1구간 2.5% 포인트로 한다. ②방식에 따른 결과로 쿼터 내 관세가 10% 미만이면 영세율로 하고, 쿼터 내 관세가 30% 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쿼터 내 관세 감축은 평균 감축률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쿼터 관리방식¹⁴⁾은 『UR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ILP)』의 틀 안에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로 간주하여 농업협정 아래 자세하고 추가적인 의무로 규정한다.¹⁵⁾

12)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p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p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5%p의 관세를 쿼터내관세(in-quota tariff)라 하고 120%p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13) 개도국은 감축의무가 없다.

14) 각국별로 수입쿼터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수입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터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 이라고 한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15) ① 쿼터 개방 90일 전에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② 예정된 쿼터 신청자는 단일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신청문서 처리 기간은 쿼터 개방일 전까지이다. ④ 쿼터에 대한 수입허가는 경제적인 물량이어야 한다. ⑤ 쿼터 충족률은 통보해야 한다.

충족하지 못한 쿼터를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은 쿼터 배정기간 안에 하거나,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수입허가 기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¹⁶⁾

2.2.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분야

국내보조 관련 세부원칙 개정안은 초안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초안에 비해 이행기간과 이행 첫날 감축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16) ① 첫 감독연도에 수입국이 충족률을 통보하지 않거나 충족률이 [X%] 미만일 때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WTO 사무국이 관리하는 추적 등기부(tracking register)에 등재할 수 있다. ② 수입국은 문제를 제기한 모든 관심 회원국과 쿼터 관리방식에 관해 논하여 쿼터 미충족에 이른 시장상황, 쿼터 관리방식 등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③ 충족률이 2년 연속 [X%] 미만이거나 이행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때에는 미충족 해결방식이 발동되며, 농업위원회(COA)를 통해 회원국은 수입국이 쿼터 관리방식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입국은 요구된 조치를 취하거나, 이전에 가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족률 개선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⑤ 수입국 조치로 충족률이 [X%] 이상이 되면 사무국 추적 등기부에 '해결(resolved)'로 기록한다. ⑥ 충족률이 [X%]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 회원국은 관리방식의 추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3년 이상 연속으로 미충족, 곧 3년 연속 충족률이 [X%] 미만이고, 이전 3년 동안 충족률이 연간 최소 [Y%] 증가하지 않고, COA에서 회원국이 미충족 해결방식의 최종 단계를 발동하기 원한다고 발언하는 경우에 수입국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또는 자동·무조건 수입허가(license on demand)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⑧ 위 두 방식 중에 선택은 관심 수출국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수입국은 선택된 방식을 최소 2년간 유지하고 통보하면 추적 등기부에 '중료(closed)'로 표기한다.

무역왜곡보조총액(OTDS)¹⁷⁾

개정안에서 OTDS 구간별 감축률은 초안과 동일하다<표 9>.

표 9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규모 및 감축률

구간	OTDS규모(\$억)	OTDS감축률(선진국)	OTDS감축률(개도국)
1구간(EU)	600 초과	[75] [85] %	[33.3] [40] % 선진국(3구간)의 2/3
2구간(미국, 일본)	600~100	[66] [73] %	
3구간(기타국가)	100억 미만	[50] [60] %	

세부원칙 개정안이 초안과 다른 점은 이행기간과 이행 첫날 감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¹⁸⁾.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며,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구간을 3개로 나누고 지원규모가 클수록 많이 감축한다. 1, 2구간은 이행 첫날 총 감축액의 1/3을 감축하고, 나머지 감축률은 5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축한다. 3구간은 이행 첫날 총 감축액의 25%를 감축하고, 나머지 감축률은 5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축한다.

- 17) DDA 협상에서는 감축보조(AMS), 감축면제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DT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 18) 초안에서는 이행 첫 해 최소한 총 감축액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나머지 이행기간 동안 균등하게 감축하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감축율의 2/3 적용 및 선진국보다 긴 이행기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률(3구간)의 2/3를 적용하여 이행 첫날 총 감축액의 20%를 감축하고, 나머지 감축률은 8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축한다.

OTDS 감축기준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최종 감축대상보조(AMS) 양허수준에 1995~2000년 농업생산액의 10%(품목특정 De minimis 5%+품목불특정 De minimis 5%)를 더하고 여기에 현재 블루박스 지급액 및 농업생산액(1995~2000년 평균)의 5% 중 높은 수치를 더한 것이다.

2구간 회원국 중 OTDS가 농업총생산액의 40% 이상일 때에는 1, 2구간 감축률 차이의 1/2만큼 추가 감축하며, 저소득 신규가입국(RAM)¹⁹⁾은 OTDS 감축을 면제한다.

감축대상보조(AMS)²⁰⁾

초안에 있던 AMS 구간별 감축률 괄호([])를 제거하였고, 이행기간과 이행 첫날 감축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며,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 2구간은 이행 첫날 총 감축액의 25%를 감축하고 나머지 감축률은 5년 동안 균등하게 감축한다. 3구간은 이행 첫날부터 시작하여 5년에 걸쳐 6회 분(installments)으로 균등하게 감축한다.

19)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하였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가축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이다.

표 10 감축대상보조(AMS) 규모 및 감축률

구간	AMS규모(\$억)	AMS감축률(선진국)	AMS감축률(개도국)
1구간(EU)	400 초과	70 %	30 % 선진국(3구간)의 2/3
2구간(미국, 일본)	400~150	60 %	
3구간(기타국가)	150억 미만	45 %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률(3구간)의 2/3를 적용하여 이행 첫날부터 시작하여 8년에 걸쳐 9회 분(installments)으로 균등하게 감축한다.

최종 양허된 AMS 규모가 큰(농업생산액의 40% 이상)국가는 추가 감축 노력을 해야 하며, 2구간에 속한 국가(미국, 일본)는 1구간과 2구간 감축률 차이만큼 추가 감축하고, 3구간에 속한 국가는 1구간과 2구간 감축률 차이의 1/2만큼 추가 감축해야 한다.

품목특정 AMS 상한은 UR 이행기간(1995~2000년) 동안 지원된 평균으로 하며, 이행기간 동안 균등 유지된다. 단, 미국의 경우는 1995~2004년 품목별 평균 지원 비율을 산정한 후 그 비율을 1995~2000년 전체 지출에 적용해 품목별 상한을 설정한다.

표 11 우리나라 품목별 AMS 지급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쌀	20,160	19,099	18,843	15,098	15,032	16,472	15,829	15,041	14,255	13,708
보리	516	509	460	468	487	418	475	457	457	396
옥수수	60	56	57	62	-	-	-	-	-	-
유채	18	10	9	-	-	19	10	6	5	7
콩	-	-	-	-	-	-	-	-	-	473

자료: 농림부

기준기간 이후 품목특정 AMS를 지원한 품목은 기준기간 이후 통보된 최근 2개년을 기준기간으로 활용한다. 기준기간 동안 품목특정 AMS를 De minimis 이하로 지원한 품목은 현행 새로운 De minimis 수준을 초과하여 지원이 불가능하다.

개도국인 경우, 품목별 AMS는 아래 각 항목에 의해 만들어진 각각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의 평균 적용 수준
- 2) 품목특정 De minimis의 2배
- 3) 연간 총 AMS의 20%

품목특정 AMS 상한 기준년도는 UR 이행기간 동안(1995~2000) 지원된 실적의 평균이 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UR 이행기간 동안(1995~2004) AMS 지원대상은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5개 품목이 해당된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²¹⁾

De minimis 구간별 감축률 및 지원한도는 초안과 동일하게 선진국의 경우 최소 50% 또는 60%이다<표 12>.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행 첫날부터 적용된다.

21) De-minimis는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성격이 같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한다.

표 12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감축률 및 지원 한도

구 분	감축율	지원 한도
선진국	[50] [60] %	(현행) 생산액의 5% → (감축후) 생산액의 2~2.5%
개도국	[33] [40] %	(현행) 생산액의 10% → (감축후) 생산액의 6~6.7%

자료: 농림부

AMS가 있는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율의 2/3를 적용하되, OTDS 감축률을 조정해야 할 경우 더 많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AMS가 없거나, AMS 대부분을 생계농에게 지원하는 개도국은 감축이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의 저소득 신규가입국(RAMs)은 De minimis 감축이 면제된다. 단, AMS가 있고 De minimis가 5%인 경우 선진국의 최소 1/3 감축 적용 및 선진국보다 5년이 긴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축해야 한다.

블루박스(Blue Box)²²⁾

블루박스 감축률 및 지원한도는 초안과 동일하다. 현행 블루박스 조항(AoA Article 6.5)²³⁾에 생산제한 요건이 없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고, 상한은 선진

22)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는 감축보조(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이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3)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은 현행 총 AMS 계산에서 면제됨.

(a)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로 다음 요건을 충족

-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경지 및 생산량에 기초하거나
- i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수준의 85% 이하이거나
- i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짐.

(b) 생산제한 없이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접지불로 다음 요건을 충족함.

-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경지 및 생산량에 기초하거나
- 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지고
- iii) 이러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기준의 85% 이하에 대해 이루어짐.

국인 경우 기준기간(1995~2000) 동안 평균 농업생산액의 2.5%이며, 개도국인 경우는 5%로 이행 첫날부터 적용한다.

기준기간동안 블루박스를 OTDS의 40% 이상 수준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감축대상보조 총액의 감축비율을 적용하여 감축하고, 즉각적인 상한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짧은 이행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 이상을 지원한 특정품목의 경우 개도국은 블루박스의 전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다. RAM의 최대 허용 보조액은 1995~2000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5%이다.

블루박스 품목별 상한은 현 블루박스 지급실적이 있는 품목인 경우, Old 블루박스는 1995~2000년 평균 지원실적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New 블루박스는 현행 지급되는 수준의 [110] [1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AMS 품목은 AMS를 감축하는 만큼 블루박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다. 기준기간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이 없는 품목은 총 블루박스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 블루박스의 10%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허용보조(Green Box)²⁴⁾

허용보조(Green Box) 관련 세부원칙 개정안은 기존입장과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으나,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주석 5), 비연계소득보조(a항), 투자자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b항), 지역자원계획에 따른 지불(b항)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²⁵⁾ 특히 수혜자격기준 강화 및 기준기간 변경 가능성은 초안과 동일하나 기준기간 변경시 예산제약 조건은 삭제되었다.

24)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의 보조금은 감축 의무가 없으며, 이를 허용보조라고 한다.

25) 이번 세부원칙 개정안에서 UR 농업협정문의 Annex 2는 Annex B로 수정되었다.

2.3.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분야

수출경쟁 분야의 모델리티 개정안은 초안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금 철폐시기와 환급기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명확화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수출보조²⁶⁾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세부원칙 개정안은 초안의 기본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구체적인 수출보조 철폐시기를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초안과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2010년까지 50%를 철폐하고 나머지는 매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Para142).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해야 하며, 농업협정 제 9.4조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 후 5년간 마케팅비용, 운송비용 등의 수출보조는 유지할 수 있다(Para144~145).

수출신용²⁷⁾²⁸⁾

개정안의 특이한 사항은 개도국의 환급기간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며, 최빈개도국(LDC)의 환급기간은 초안에 비해 늘어났다.

선진국의 환급기간은 180일로 초안과 변함없으나 개도국의 환급기간은 이행 첫날 360일, 이행 2년 후 270일, 이행 3년 후 180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최빈개도국(LDC)의 환급기간은 초안의 270일에서 개정안은 360일로 조정되었다. 자생기간(self-financing)은 선진국은 [4] [5]년, 개도국은 [6] [7.5]년으로 초안과 동일하다.

26)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7)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하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을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28) 개정안은 Annex J 규정을 따르며, 초안의 기본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국영무역기업²⁹⁾

2013년까지 수출국영무역 기업의 독점력을 철폐해야 한다. 수출국영무역 기업의 독점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율을 우회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개도국의 경우 국내소비자 가격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출국영무역 기업, 연속 3년간 해당품목 세계수출의 5% 미만을 차지하는 농업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은 허용한다.

식량원조³⁰⁾³¹⁾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공여로 제공한다. 수혜국의 같은 품목 또는 대체품목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긴급상황에 따른 현물 또는 현금의 식량원조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혜국 또는 UN 사무총장의 긴급상황 선언, 둘째, UN 관련 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관련지역 또는 국제기구, NGO의 긴급상황 호소, 셋째, 긴급상황을 호소한 기관에 의한 수요평가가 필요하다. 수요평가 기간은 3개월로 하되, 같은 기간 중 부정적 평가가 없는 이상 지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9) 개정안은 Annex K 규정을 따르며, 초안의 기본을 유지하고 있다.

30)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재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 방향이다.

31) 개정안은 Annex L 규정을 따르며, 초안의 기본을 유지하고 있다.

비긴급상황시 현물지원은 인정된 기관에 의한 수요평가 시행, 사전에 확인된 수혜대상에 한정, 특정 개발 목적 또는 영양상의 이유 등의 규율을 적용한다. 현금화는 식량원조 이행에 직접 관련된 활동, 농업투입재의 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3. 협상 동향

협상 참가국들은 의장의 개정안을 향후 논의의 기초로 평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그룹별 입장을 재강조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특별품목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정텍스트를 신중하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관련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수출국의 양보가 있어야 G33³²⁾의 새로운 입장도 제시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핵심그룹회의에서는 SSM 관련 개정안에 제시된 품목범위, 발동기준·구제 조치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특히, 품목범위는 구제 수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SSM의 여타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제시 될 경우에 고려가능하다는 선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G20³³⁾, 케언즈그룹 등은 선진국 ambition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통적으로 관세상한³⁴⁾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G10³⁵⁾, EU는

32)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3) G20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보면 된다.

34)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선진국 최소 감축율 설정, 민감품목 TRQ 증량 등의 이슈에서 수입국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대응하였다.

관세감축공식 및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의장은 수치범위 대신 범위의 중간치를 []로 처리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룰 것을 희망하였으나, 모든 국가들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G10이 관세상한의 대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수출국 및 G20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단순 관세상한 도입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관세상한 대안이 G10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하고 단순한 관세상한을 논의하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4. 향후 전망

팔코너 의장은 2월 18일부터 다자협의를 통해 회원국간 의견 조율을 거쳐 3월초 보완된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170여개 괄호(선택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품목특정 AMS 상한(면화보조 포함), DM 감축, 기준 연도 결정, 미국의 OTDS 감축처럼 여전히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완된 개정안 제출 이후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³⁶⁾가 진행될 전망이다.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 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35)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36) 두 가지 이상의 협상의제를 동시에 논의하여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동시에 도출하는 방식으로 고위급회의·각료급회의 순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문간 협의를 통해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2008년 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문간 협의 일정 및 범위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 등 회원국의 정치적 일정으로 인하여 2008년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³⁷⁾.

5. 향후 일정³⁸⁾

- 2월 15일: 농업교섭주체회의
- 2월 18일: 농업교섭소수국회의
- 2월 22일: 농업협상전체회의
- 3월 말~4월: 세부원칙(Modalities) 협의를 목표로 내각회의
- 12월: 최종채결의 목표기한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2008.2.12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일본농업신문, 2008. 2. 10.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 2008. 2 발췌정리

37) 농림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p.8, 2008.2.12

38) 일본농업신문 12면, 2008. 2. 10.